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근로자 재산형상을 위한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근로자만이 면제 혜택을 받아왔으므로 일반영세민도 이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 소규모 서민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임.
- 경과규정의 적용시기 경과

4. 주요골자

-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을시 전액면제
- 최초분양자중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규정 배제함.

5. 검토의견

-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근로자는 지방세면제혜택을 받아왔으나 일반영세민은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영세민도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과세형평을 기하고

○ 감면조례의 제정목적이 소규모 서민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조례이므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경감규정에서 배제시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분굴일과세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 이병두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 해 보고싶은데요. 지금 4조 2항에 분양받는 주택으로하되 1세대 2주택자가 될 때에는 감면혜택이 안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40㎡ 이하의 건축물을 그것보다도 더 작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서민들이, 영세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옮겨가기위해서 일단 분양을 받았습니디. 받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것은 매매가 안돼가지고 있는 상태일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1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은 영세민들을 보호한다

는 취지의 골자인데 일단은 조그마한 약 10평짜리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집을 헐고 해서 그것보다 나은 40㎡이하의 주택을 마련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로 봐서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면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감이라든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단말이에요. 혹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러한 단서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와 있는데로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것은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지금 국회의 예에 준해서 저희들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